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윤 유 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96
----------	---------

발의연월일: 2019년 11월 일

발 의 자: 윤유선, 김현희,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강선영, 이충현, 황동현
송순효, 박주선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에게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안 제2조)
- 나.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3조)
- 다. 지역의 독서진흥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등 (안 제4조)
- 라. 매년 독서의 달을 지정·운영(안 제5조)
- 마. 도서관, 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안 제6조)
- 바.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안 제7조)
- 마. 독서문화진흥 유공자 표창 등(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제8조, 제9조, 제12조~제1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부서: 교육청소년과

라. 입법예고(2019. 11. 13. ~ 11. 18.):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 과제,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 계획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 소외·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 하는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독서아카데미, 동아리 리더 연수 등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4.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운동 전개
5. 백일장,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도서 관련 발표회 등 독서 관련

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구청장은 독서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독서 동아리, 독서 관련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독서의 달을 지정·운영한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의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계획의 집행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학으로 구성된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

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

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